

제2025-104호 2025년 12월 8일(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14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54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5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556호 도로지정 공고(신덕동45번지 외 1필지)
- 여수시 공고 제2025-3569호 2026년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571호 공인 등록 공고(여수시 공고 제2025-3571호)
- 여수시 공고 제2025-3576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재공고(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연결도로사업)
- 여수시 공고 제2025-3581호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

규 칙

- 여수시 규칙 제871호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여수시 규칙 제872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257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58호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59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0호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1호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2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3호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4호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5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6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7호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8호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69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70호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71호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72호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73호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74호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50 (2025. 4. 10.)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남면 심장리 976-1번지 일원	2,790.23㎡	2025. 12. 4.	남면 미포마을 방파제 연장공사

2025. 12. 4.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05.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4.

여수시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197-8번지 지선 공유수면	화정면 여자리 부잔교 설치공사	1,819㎡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12. 4. ~ 2025. 12. 24.(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12. 4. ~ 2025. 12. 24.(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jonghyun9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4.

여수시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456-11번지 지선 공유수면	화정면 여자리(마파) 방파제 보강공사	213㎡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12. 4. ~ 2025. 12. 24.(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12. 4. ~ 2025. 12. 24.(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jonghyun9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신덕동 45번지 외 1필지(46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12. 4.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신덕동 45번지 외 1필지 (46번지)
2. 도로면적 : 7㎡
3. 도로길이 : 8.2m
4. 도 로 폭 : 0.8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42	7	
신덕동	45	대	142	7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위 치 도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

2026년도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여 수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신분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장 등)	9명 (예비합격자 9명)	2026. 1. 1. ~ 2026. 12. 31. (09:00 ~ 18:00 / 1일 8시간, 월~금)

주요 업무	○ 재활용품 선별작업 - 폐지, 고철, 알루미늄캔, 유리병, 잡병, PET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 선별, 압축 등 - 폐가전제품 집하장 : 폐가전 선별 밴딩, 상·하차 시 지원 등 ○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수집, 운송 작업(차량 및 지게차 운전 포함) ○ 재활용품 수집행사 및 홍보체험 행사 지원(트럭 등 운전 포함)
-------	---

※ 채용 후 65세 이상은 재계약 불가

2 급여수준

보수	기타
시급 11,340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 시간 외 근무 및 휴무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 시 대체휴무 제공(8시간 이상) 또는 근무수당을 지급함.

3 응시 자격 및 가산점 요건

관련분야 :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재활용품 운송, 재활용 행사지원 등		
응시 자격요건	자격	○ 2026년 1월 1일 기준 55세 이상 ~ 65세 이하 근로 능력자 (생년월일 1960.1.2. ~ 1971.12.31.)로서 우리 시 거주자이며, 공고 시작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있는 자 (고령자 친화직종)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 지게차 운전면허(10점) ○ 자동차 운전면허(1종) (5점) * 가산점은 지게차와 운전면허 중 1건만 적용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분야별 우대요건

□ 가산점 요건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면접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은 최대점수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 과 우대요건 가점은 개별 합산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서류, 면접 각각 적용)	
분야별 우대요건	우대요건 참조 (서류, 면접 각각 적용)	

* 가점 항목별로 중복가점은 불가하며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이하의 작업 내용 및 특수성 등으로 65세 초과 연령의 응시가 제한됨에 유의

- 직무 특수성 : 컨베이어벨트 선별, 중량물 운반, 위험 기계(파쇄기·압축기 등) 조작, 장시간 입식 근무 등 고강도 육체노동이 수반
- 작업 환경 : 지게차 및 수거 차량이 빈번히 이동하는 현장 특성상 돌발 상황에 대한 신체적 민첩성과 지구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안전사고예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위험 공정 안전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사업장임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17.(수)

나. 접수기간 : 2025. 12. 15.(월) ~ 2025. 12. 17.(수), 13:00 ~ 18:00

다. 접 수 처 : 여수시 시청동1길 23, 3층 자원순환과(자원활용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접수메일 : edgeworks@korea.kr)

※ 방문접수는 평일 오후 근무시간(13:00 ~ 18:00)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의 경우 2025. 12. 15.(월) 13:00 ~ 2025. 12. 17.(수) 18:00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전자우편은 접수기간 종료 전 반드시 061-659-3839로 전화해서 제출확인 받아야 함

5 응시제한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 자(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2. 18.(목) 이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5. 12. 19.(금) 14:00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면접시험 평정표

평 가 항 목(5개항목)	점 수	비 고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본 채용의 서류전형은 적격 여부만 판단하나, 최종 점수 합산시 서류전형 적격자의 심사 점수는 50점+가산점 적용함

※ 면접시험 점수는 면접위원별로 합산 후 면접위원 수로 나눈 뒤(만점 50점) 가산점을 합산
→ 총점수 : [서류전형 50점(적격시 일괄 50점) + 가산점] + [면접시험 50점(최대) + 가산점]

※ 동점 시 면접 평정항목의 「상」(면접위원 점수표별 갯수 합계, 상상·중상 동일)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 상 개수가 동일할 시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고점자로 결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2.(목) 이후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7 제 출 서 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라.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만 표시)
- 마. 경험 및 경력기술서 1부
- 바.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확인서 1부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관계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 사.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증명서) 각 1부(원본 제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아.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자.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결과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 양식은 우리 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 가능함
- 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주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주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 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번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합니다.
- 사.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 061-659-383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채용분야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	--	------	----------	--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지원직무		
현주소	도로명주소 번호 앞까지만 기재(동호수 등 세부내역은 미기재)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가점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 기타 (해당자만 체크)			

2. 교육사항(1)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교육사항(2) *지원자격 요건상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경우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3.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만 기입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역
☐ 경험 ☐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원자 : 여수시장 귀하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뒷면>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 ① 응시원서 :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 ② 이력서 : 인적사항 및 해당사항 전부 입력
- ③ 자기소개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④ 직무수행계획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⑤ 경험 및 경력기술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 ⑦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 친인척 기준을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입

【 붙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만 표시)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증명서) 각 1부(원본제시, 자격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이 력 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 득 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인 여부	장애 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취업대상자 및 저 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 호대상자

※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 '○' 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2쪽)

○ 각 항목에 대하여 60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칸을 별도로 늘려 활용가능>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본 항목에 따라 기술하고 지원동기, 성격 및 가치관, 업무의 전문성, 앞으로의 다짐 등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학교명, 출신지, 예전 직장, 부모직업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3쪽)

3. 과거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경험 및 경력기술서

(4쪽)

○ 작성요령

- 이력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음

1) 소속 조직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2)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나누어 작성 기재)

3)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행동

4) 본인의 성과(업무 추진)으로 인해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5) 지원분야 업무 수행 시, 본인의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측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수시는 000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붙임 6】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 성 명 :

○ 응시번호 :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현황

*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별첨 참조)

연번	친인척 성명	친인척 직급(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1			
2			
3			
해당 없음			

상기 본인은 공정한 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청 내 친인척현황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으며 해당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서약합니다.

2025. . .

작성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6-1】

작성 대상 친족 기준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형제의 자녀 (조카)	○백부, 숙부, 고 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외조부모	○외백부, 외숙 부, 이모 및 그 배우자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부모	○조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형제의 자녀 (조카)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외조부모	○외백부, 외숙 부, 이모 및 그 배우자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0000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5-3571호

공인 등록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5.

여 수 시 장

1. 등 록 일 : 2025. 12. 5.
2. 등록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신규 등록
3. 등록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등록인영	관리부서	사용일
등록 (2305)	여수시장인대교동장전용(종)		대교동	'25. 12. 8.
등록 (2306)	여수시장인대교동장전용(횡)		대교동	'25. 12. 8.
등록 (2307)	대교동장인민원실전용(종)		대교동	'25. 12. 8.
등록 (2308)	대교동장인민원실전용(횡)		대교동	'25. 12. 8.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재공고(기간연장)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연결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재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연장된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12. 8.

여 수 시 장 (인)

- ☐ 사 업 명 :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연결도로사업
- ☐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 열람기간(연장) : 2025.11.24. ~ 2025.12.18.(25일간)

- (기존) : 2025.11.24. ~ 2025.12.10.
-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여수시 도원로 279, 허재영정형외과 2층), ☎ 061-659-4589
- ☐ 의견제출기간 : 2025.11.24. ~ 2025.12.18.(25일간)
-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연번	소재지	당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1	여수시 화치동	1473	영업보상	상호: 에스에이치이엔씨17호 태양광발전소 (영업규모축소보상및잔여시설보수) 발전량:편입철거부분: 79.38Kw(전체:975.24Kw)	1	식	유한회사 백암1호 이사 이*곤	
	여수시 중흥동	1743						
2	여수시 화치동	1473	태양광 발전설비1	태양전지판(모듈) Model: JKM405M-72H-TV , 2,031x1,008mm(405Wp)x196ea (#9번:126ea,#10번:70ea)	1	식		
	여수시 중흥동	1743						
3	여수시 화치동	1473	태양광 발전설비2	인버터 x 2ea Model:SP-60K-L,PV발전기 최대전력:60.0kw, 정격출력:60.0kw.	1	식		
	여수시 중흥동	1743						
4	여수시 화치동	1473	태양광 발전설비3	하부 프레임(기둥) : 0.2x0.1x4.0mH x32ea(기초콘크리트포함)배관및배선 등	1	식		
	여수시 중흥동	1743						

-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 공고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어업인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 12. 8.

여 수 시 장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2. 신청자격(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 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②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 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선택의무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
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3. 제외대상 :

- ① 감척대상 어선(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
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 ②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라
이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지
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2를 참조

4. 지급 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
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 을 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6.9.30.)까지 이행할 것
- ※ 기본의무(홍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6.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 조업일수 산정기간('25.10.1.~'26.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5. 지원금액

- 지원율 : 국고 100%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
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 선단조업 :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허가받은 어선(본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
받은 '부속선'의 톤수는 10%만 인정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 지급상한톤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 원), 법인은 최대 140톤
(9,250만 원)으로 한정

6. 지급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은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7. 지급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과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이후 직불금 지급

8. 지급제한

- (개인의 직불금 지급 제한) 지급대상 후보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구성원의 직불금 지급 제한) 이행점검결과 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예비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단체 지급 제한) 예비 지급대상 후보단체는 단체의 순위에 따라 기준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우선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기준 직불금 이내인 경우, 차순위 단체의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하여 지급

구분		지급 제한	이행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까지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6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 미지급,	
7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시 20% 미지급,	
8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 40% 미지급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의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에 대해 단체 구성원들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하면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 직불금 지급 미지급(감액) 비율 >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감액 비율	비고
20% 이상 30% 미만	10%	■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 인원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하위비율은 ‘올림’ 처리하고 상위비율은 ‘버림’ 처리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전액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 선정 통보 이후 중도에 포기하는 구성원은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으로 간주

- 예비 지급 대상 후보단체는 후보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단체에 기준 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기준 지급금 지급에 부족할 경우는 차순위 단체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하여 지급

□ 단체에 대한 제재

- 직불금을 이미 받은 자가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불금 수령자가 포함된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제재

구분	총허용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그 외 자원보호의무 (생분해성어구 사용 등)
미이행 어선이 포함된 단체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해당없음

□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직불금 수령자에게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즉시 환수

□ 제재부가금의 징수

-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으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
-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받은 자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를 추가로 징수

***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II. 신청 기간 : 2025. 12. 9. ~ 2025. 12. 31.(23일간)

III. 신청장소(방문 접수) :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3층)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659-3918)

IV. 구비서류

○ 단체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각 1부

○ 소속 어업인 :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각 1부.

* 별지 제4호는 [별지 제2호]의 단체 이행 세부 계획서와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

- 매매매: 구매확인서[별지 제2호 참고서식]와 영수증 사본 등
위판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기간 : 25. 1. 1.
~ 12. 31.)

- 수협위판: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별지 제2호 참고서식]

※ 공고문과 지침이 상이할 경우 사업지침이 우선함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 32 -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2025. 00. 00.(제출일)

(단체명)

1

단체 현황

업종	허가수(어업인수)		주요어획어종
근해채낚기	○○건(○○명)	경북 ○○건, 강원 ○○건, 제주 ○○건	갈치(70%), 오징어(20%), 기타(10%)
근해연승	○○건(○○명)	경북 ○○건, 강원 ○○건, 제주 ○○건	

* 주요 어획어종은 신청단체의 구성원의 주요어획어종을 표기하되, 어획어종별 어획량 비중을 () 내에 백분율(%)로 표기

2

자원보호의무 이행 계획

1. 필수업무 (작성 예시)

구분		①	②		③	④	⑤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 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5.7~'26.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 1) TAC 어종 개수 : '25.7~'26.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50% 이상 적용하는 어종만 적합성 평가 시 인정. TAC 어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 2) TAC 관리 비율 : '24.7~'25.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 중 TAC 어종 어획량(TAC 소진량) 비율.
 -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은 '24.7.1~'25.6.30 수협위판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신청단체 구성원의 TAC 소진량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확인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2. 선택의무 (작성 예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참여어선 수	조업중단 기간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26.6.1 ~ 6.30(1개월) (해당기간 전면 조업중단)	출입항기록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으로 조업상황 보고	해수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에 보고된 어획실적
어선 감척	단체의 어업종류명		증빙 자료
	근해연승		-
그 밖의 의무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총 00톤(척당 00톤) '26.1.1 ~ 9.30. (연안)총 00kg(척당 00kg) '26.1.1 ~ 9.30.	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등 수거량(Kg 환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
	어구보증금제 이행	폐어구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현황 등
	생분해성 어구 사용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또는 생분해 어구 구매 계약서 (생분해 성능 인증서 포함)
	해양포유류 흔적저감장치 부착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해양포유류 흔적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과학원)」 별표1에서 적용하는 업종만 인정)	흔적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어구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6.1.1 ~ 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6.1.1-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채포 체장·체중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종자방류 총 00명 중 00명 참여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6.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기타 준수 의무	-	-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하되, 선택의무별로 단체 구성원수의 4/5이상 참여해야 점수 부여 하되, 선택의무로 어획증명을 선택한 경우는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참여 어업인 명단(TAC)

[illegible]

참고서식

* 필수업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확인 및 증빙서류를 ‘수협위판 기록’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제출

총허용어획량 개인(업체) 간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간 매매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어업허가 (면허, 신고) 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록(등록번호:)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허가(면허, 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면허, 신고)기간	포획물·채취물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 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			어획량(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접검·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 “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 “어업허가(면허, 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면허·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면허·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 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6. “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 표시를 합니다.
7. “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 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 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 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 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 참여단체명 : ○○○협회, 단체, 조합 등

1. 필수업무

구분		①	②		③	④	⑤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 의무	해수부/지자체 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5.7~'26.6	○○○톤	해수부(또 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2. 선택의무

구분	의무 내용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 자료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주요어획 어종 및 전면 조업중단 기간		출입항기록
	오징어 ‘26.2.1.~’26.2.28.(1개월)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이행할 의무 >	< 이행할 내용, 기간 등 >	
	어구 제한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6.1.1.~’26.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6.1.1.~’26.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채포 체장·체중 제한	채포금지체장 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종자방류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6.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어구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무를 선택할 경우 이행점검계획서 작성시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하여 제출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통한 접수순서로 하되,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및 방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수강생 등록 인원이 모집 정원의 60%에 미달할 경우 폐지할 수 있다.

제3조(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및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시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4조(수강료 감면)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평생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
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한 사람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 자격증 등 강
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해당분야의 자격증 또는 졸업증서를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신청서
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사 위촉을 위한 평가회의를 운영할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 ①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 해당분야의 전공 여부,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강사료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강사의평가) 시장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동아리 등의 학습 활동
2. 평생학습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사항은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감면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및 장애인”을 “등의”로 한다.

제19조 중 “제42조”를 “제43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0조) 중 “제45조”를 “제46조”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급수정지처분 예고)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	제18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감면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에 <u>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임을 증명하는 자료나 감면해지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업무 담당 부서(감면대상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포함)에서 감면대상자의 신상변동사항(신규·전출·사망 등)을 일괄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 ----- ----- <u>감면대상자</u> ----- ----- ----- ----- ---. ----- <u>등의</u>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급수의 표지)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급수의 표지) -- <u>제43조</u> -- ----- ----- ----- ---
<신설>	<u>제20조(급수정지처분 예고) ①</u> 조례 제44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

<u>제20조</u>(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 조례 <u>제45조</u>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는 시장이 부과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u>②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u> <u>제21조</u>(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 -- <u>제46조</u>----- ----- ----- -----.
--	--

여수시 조례 제2257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099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항
중“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 제13조의 규정 에 따른 섬박람회지원단의 존 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 까 지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 ----- ----- ----- <u>2026년 12월 31일</u> --- -----.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인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지정 신청)”을 “(지정 및 변경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고자”를 “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 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 표자 성명		
	주소	전 화번 호		
	설립일	회 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여수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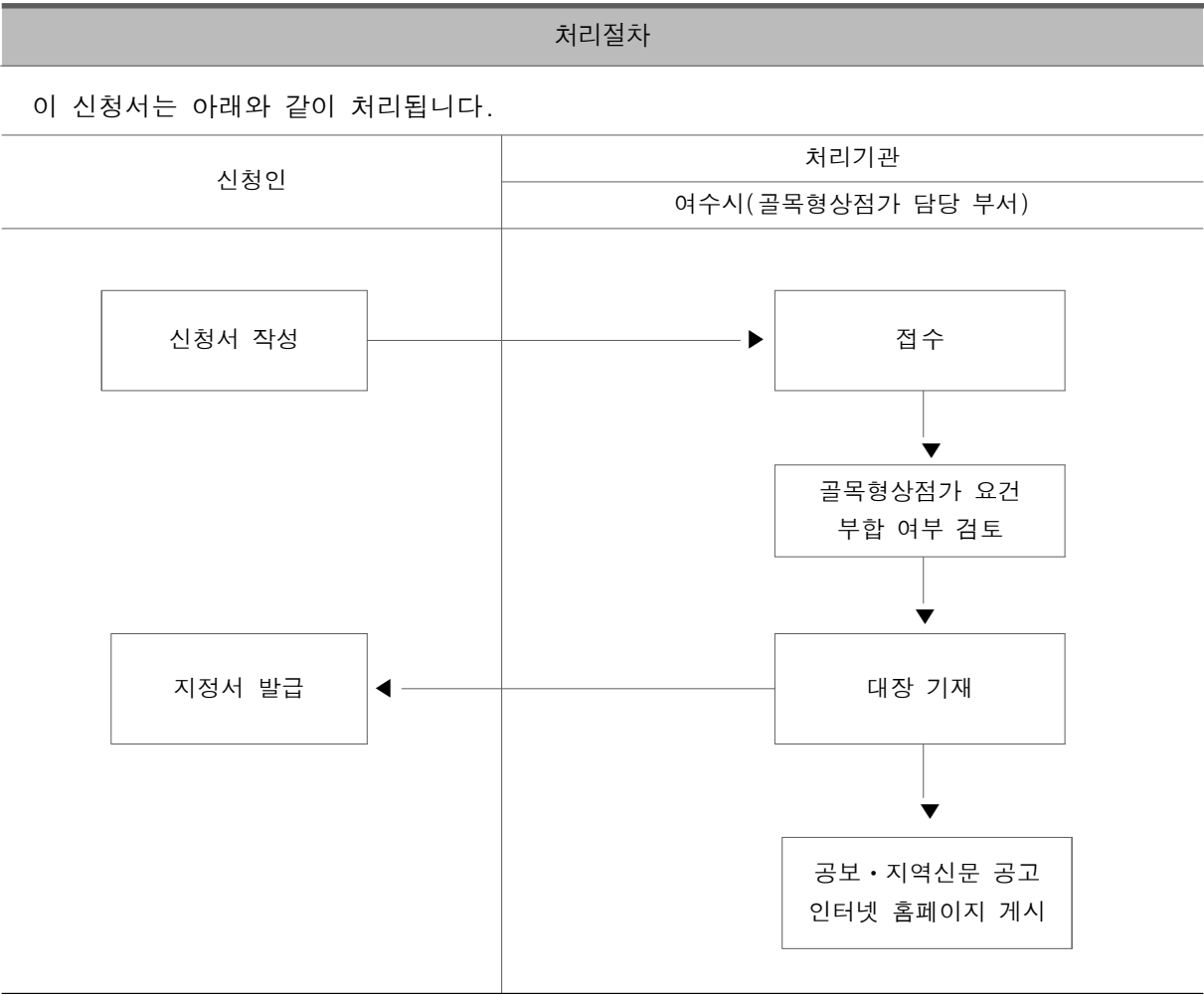
이
이
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정기준) <신 설>	제3조(지정기준) ①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인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4조(지정 및 변경 신청) --- 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 ----- ----- ----- -----

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6조(지정 취소)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실시하고,</u> <u>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u>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 ----- ----- ----- <u>권장하여야 한다.</u>
---	---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여수박람회법 제15조제1항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

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② -----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및 여수박람회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략)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2027년 12월 31일-----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문화·관광축제 및 특산물 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수시축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축제 담당 국장이 된다.

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의 추진위원은 제외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의 축제 등과 관련된 업무 소관 부서의 실·국장
3. 축제, 안전관리, 양성평등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수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익목적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폐합
2.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
3. 축제별 평가결과 검토 및 반영
4.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축제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보조·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축제는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추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를 주관하여 전반적인 행사 진행,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심의)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120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5조(축제사후평가 보고 및 반영) ①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사후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축제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하는 비

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그 축제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는 사항을 운영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③ 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 등의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 <u>까지</u> 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30년 12월 31일</u> <u>까지</u> -----, ----- ----- ----- ----- -----.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정함.이하”를 “한정함. 이하”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수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제2항 중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한 참전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	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	사망일	
예 금 계 좌 (☐ 신규 ☐ 변경)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확인원 1부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이하 같다)를 말한다.	2. ----- ----- -----한정함. 이하 -----.
제3조(지원대상)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수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사업) ① (생략)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85세 이상인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	<삭제>

는 사람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 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략)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의뢰할 수 있다.
---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

여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의 제목 “(지급결정 등)”을 “(지급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illegible]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귀하

※ 구비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② (생략) <u><신설></u> 제11조(지급대상) ①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의 사람으로 한다. <u>다만, 당사 자만 지급하고 제14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 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u>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u>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 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 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지급대상) ① ----- ----- ----- ----- -----. <u><단서 삭제></u> 1. ----- -----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u><삭 제></u>
3. 삭 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u><삭 제></u>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u><삭 제></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	<u><삭 제></u>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u>
<u>② (생 략)</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③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u>	<u><삭 제></u>

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신 설>

제13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3. (생 략)

④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지급 방법 등)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변경신청) -----

-----.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2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4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 <u>조례</u>는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12조 ----- ----- -----.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u>조성·관리 계획</u>”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령</u>”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

제12조(가지치기) ①・② (생략) <u><신 설></u> 제17조(납부 고지) ① ~ ③ (생략)	<u>리에 필요한 사항</u>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4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가지치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납부 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략) <u><신 설></u>	행과 같음) <u>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

가. 여수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 인터넷홈페이지

다.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라.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 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건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2차로 이상 도로)”를 “(별표23 기준을 따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70조의12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 2제2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를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장관리방안의”를 “성장관리계획의”로, “성장관리방안에서”를 “성장관리계획에서”로 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제5호 중 “(300미터이내)”를 “(300미터이내,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한 경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1조제1항제3호 중 “이하”를 “이하[주택호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세대)수를 주택호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호가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근린생활시설(자목·타목 중 기원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주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제25조제3항 본문 중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를 “각 입면부의 총 길이(가로 길이에 한함)를 30미터 이하(가시되지 않는 지하층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해당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제2항제2호가목 중 “40퍼센트”를 “40퍼센트, 다만 영 제31조제2항제8호 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⑫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한다.

제34조 중 “영 제84조의2제2항”을 “영 제8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5항”을 “법 제75조의3제2항”으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1,300퍼센트”를 “1,5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1,000퍼센트”를 “1,3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700퍼센트”를 “9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1,000퍼센트”를 “1,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200퍼센트”를 “3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250퍼센트”를 “3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여수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4.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9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동일 안건을 재심의등으로 반복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3회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비공개”를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심의의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을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1개월을 말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및”을 “제39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3조,”로 한다.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별표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설 소·안마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다만, 세차장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해당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 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다만, 세차장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해당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계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 복제업·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 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다만, 세차장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해당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 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 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2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9. 5.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

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동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동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및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3]

표 고 의 산 정 기 준

1. 표고의 기준

- 가. 표고의 기준은 대상지역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표고의 산정

가. 일반적인 기준

- 1)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하의 토지
- 2)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상의 토지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나.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의 기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상일 경우 제일 가까운 도로를 기준으로 높이 30m 미만에서는 예외

- 1) 도로 : 개설이 완료된 5m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 ①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②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 2) 기준점 : 대상 토지(허가신청 부분) 중심부로부터 제일 가까운 지점의 도로중심점의 표고

3. 표고 적용의 예

제일 가까운 도로를 기준으로 높이 30m 미만이란

- 1) 기준도로 표고 100m + 예외 높이 30m = 130m
- 2) 기준도로 표고 90m + 예외 높이 30m = 120m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외에 열람기간 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도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 가. 여수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 인터넷홈페이지 다.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라. 법 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6조(재공고·열람사항) 영 제2	제6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2조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토지의 표고

가. (생략)

나.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2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미만일 것

다. (생략)

2. 3.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

1. (현행과 같음)

2. -----
----- 성장관

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역

<신 설>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2. (생 략)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
서 “그 밖에 도시·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을 말한다.

1. 2. (생 략)

3.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
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
된 사항의 변경

제16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시
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

리계획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
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
다.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

1. 2. (현행과 같음)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

1. 2. (현행과 같음)

3. 성장관리계획의 -----
----- 성장관리계
획에서 -----

제16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

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간선도로(대로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을 것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업지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1. ~ 4. (현행과 같음)
5. -----
-----(300미터이내,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한 경우 100미터 이내)-----
--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
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1.·2. (생략)

3. 주택호수 : 10호 이하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
목8)에서 “도시·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나
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
을 말한다.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경
관지구별로 규정한 각 목의 건
축물을 말한다.

1. (생략)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이하[주택호
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및 공
동주택의 경우 가구(세대)수
를 주택호수로 한다]

<삭제>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

-----.

1. (현행과 같음)

2. 특화경관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
설(가·나·다목을 제외하
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
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
설(자목·타목 중 기원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
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에 한한다)

라. ~ 너. (생략)

3. 시가지경관지구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
병원과 격리병원

다. ~ 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
설(다만, 교정시설은 교도

2. -----

가. -----
----- 공동주택 중 아파
트

<삭 제>

다. -----
----- 근린생활시
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
프연습장, 안마시술소·안
마원 및 단란주점

라. ~ 너.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격리
병원

다. ~ 차. (현행과 같음)

카. -----
----- 교정시설-----

소, 소년원 및 그 밖의 범
죄자의 갇셈·보육·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는 시설에 한정한다)

<신 설>

타.·파. (생 략)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② (생 략)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
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준
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 및 일
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
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
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
지구(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

시설

파.·하. (현행 타목 및 파목
과 같음)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각
입면부의 총 길이(가로 길이에
한함)를 30미터 이하(가시되지
않는 지하층은 제외)-----.

④ -----

관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제2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신설>

제33조(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제2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해당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

1. (생략)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
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생략)

3. ~ 6. (생략)

③ ~ ⑨ (생략)

<신설>

⑩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가. -----
----- 40퍼센트, 다만
영 제31조제2항제8호 나목
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
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
퍼센트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생산녹지지
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
퍼센트를 말하며, 영84조제8항
제1호 및 제3호의 “도시·군계
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군

⑪ <u>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u> ⑫ · ⑬ (생 략) 제3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u>영 제84조의 2제2항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u> 제35조(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u>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생 략) 2. <u>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u>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u>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u>	<u>· 구” 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한다.</u> <u><삭 제></u> ⑬ · 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제3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u>영 제84조의 2제4항-----</u> ----- -. 제35조(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u>법 제75조의 3제2항---</u>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 ----- ----- -----. 1. (현행과 같음) 2. <u>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u> -----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
---	--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 6. (생략)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로 한다)

13.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로 한다)

20. · 21. (생략)

② · ③ (생략)

④ 삭제

⑤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⑥ ~ ⑩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7. ----- 1,500퍼센트

8. ----- 1,300퍼센트

9. ----- 900퍼센트

10. ----- 1,100퍼센트

11. ----- 300퍼센트-----

12. ----- 350퍼센트-----

13. ~ 18. (현행과 같음)

19. -----
--- 성장관리계획-----

--

20. · 2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⑤ -----

----- 140퍼센트-----.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해촉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8조(위원의 구성 등) ① 영 제 1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수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신 설>

<신 설>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
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
· 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
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와 관련
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
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4.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
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해를 가져온 경우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

<신 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 위원장-----

-----.

② -----

----- 대행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

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동일 안건을 재심의등으로 반복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3회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심의의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

<삭 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방문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으로 행사 기간 동안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행사장”이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장소를 말한다.
3. “방문객”이란 제2호의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시장은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영방법) 셔틀버스는 임차 또는 자체 보유 차량을 활용하며,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노선 및 운행 범위) 시장은 행사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

는 65세 이상 시민

2.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4~64세 이하 시민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26세 이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인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선택에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택예방접종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 기타		
「여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u>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u>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앞의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7조를 제30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8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참여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①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산정 기준, 감면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 기준, 모집 절차, 위촉 방법, 평가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앞의 “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제32조(중전의 제29조) 중 “제28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생 략)	제5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 참여자 및 기관·시설·단체 등을 선정하 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 생학습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시설 또는 단체 에 대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0조(참여 지원) 시장은 평생학 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유가증권을 포함한다)또는 시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1조(수강료) ① 시장은 평생교 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 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u> <u>② 시장은 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를 시행할 수 있다.</u> <u>③ 수강료의 산정 기준, 감면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u> <u><신 설></u> <u>제20조 ~ 제23조 (생 략)</u> <u>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u> <u><신 설></u> <u>제24조 ~ 제28조 (생 략)</u> <u>제29조(준용) 제28조에 따라 위탁 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u> <u>제6장 보칙</u> <u><신 설></u> <u>제30조 (생 략)</u>	<u>제22조(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강사를 위촉할 수 있 다.</u> <u>② 강사의 자격 기준, 모집 절 차, 위촉 방법, 평가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삭 제></u> <u>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u> <u>제23조 ~ 제26조 (현행 제20조부 터 제23조까지와 같음)</u> <u><삭 제></u> <u>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u> <u>제27조 ~ 제31조 (현행 제24조부 터 제28조까지와 같음)</u> <u>제32조(준용) 제31조-----</u> <u>-----</u> <u>-----</u> <u>-----</u> <u>-----.</u> <u><삭 제></u> <u>제6장 보칙</u> <u>제33조 (현행 제30조와 같음)</u>
---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설치하는 급수장”을 “설치하는 급수장치”로 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번지내”를 “도로명주소 내”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은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2026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 수 수 료 표

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5. 제44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별표 6]

과 태 료 및 행 정 처 분 기 준 (제47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부정급수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 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방해 ,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40,000원	·철거 또는 허가철차 이행명령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 위반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별지 제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감면 해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 용 가	수용가번호 (관리번호)			업 종	
	주 소			가 구 수	
	성 명			전화번호	
감 면 대상자	사 유	■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자격발생 (해지)일자			전화번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여 수 시 장 귀하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자녀가구·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감면 해지신청시) 해지 증명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u>설치하는 급수장</u>		1. -----		
2. 3. (생략)		-----		<u>설치하는 급수장치</u>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③-----		
6. <u>제43조제3항</u> 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		
7. (생략)		-----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⑤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⑥동일 건물 또는 동일 <u>번지내</u> 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 받는 경우에는 각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6. <u>제44조제3항</u> -----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		
		7. (현행과 같음)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도로명주소 내</u> -----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감면은 다른
호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하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sists of ten identical row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designed for tracing or writing practic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1. · 2. (현행과 같음)

3. 2명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 의 요금을 면제한다. 4.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4조(급수정지처분) ① ~ ③ (생 략) <u><신 설></u>	----- -----.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급수정지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 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야 한다.</u>
--	---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과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하고 그 정신을 계승·선양함으로써, 여수시를 ‘이순신의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해양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수군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
2.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선조 26년(1593년) 교서 “교전라좌도수군절도사겸삼도수군통제사리서(敎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水軍統制使李書)”에 의해 설치된 삼도수군통제영을 말한다
3. “이순신 정신”이란 임진왜란 당시 여수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정신과 이순신이 지닌 사랑·정성·정의·자력 등 시민이 본받을 수 있는 품성을 의미한다.
4. “선양사업”이란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교육, 기념행사, 콘텐츠 제작, 학술연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역사문화 진흥”이란 전라좌수영 본영으로서 여수시가 지닌 역사적 정

체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향토유산, 인물사 등을 발굴·보존·활용하여 여수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역사문화 진흥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 시장은 충무공 이순신 정신의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 포함한다), 제례 및 전승일 기념 행사 개최
2.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순례, 국제교류사업 등 행사 개최
3. 충무공 이순신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
4.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 수군통제영의 문화유산 사적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5.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연구 및 선양
6. 청소년 및 시민이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
6. 해양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8.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협력
9.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시민 해양교육 활동 지원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3.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지원
4.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해양교육 홍보 및 행사 개최
6. 해양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교육·홍보 및 관련 행사
2. 해양문화 유산 발굴·보존 및 계승
3. 해양문화 자원 조사·연구 및 개발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5. 해양문화산업의 지원
6.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해양문화 전문인력 양성
8. 해양문화 시설 확충
9. 그 밖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효행장려금 지원

제8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효행 우수자
2.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이상 노인의 부양자
3. 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부양자

제9조의 제목 “(효행 지원 등)”을 “(효행 장려금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효행장려금은 해당연도의 추석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추

석 전 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효행장려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u>“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u>
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 (생략)	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u>효행장려금 지원</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8조(효행자 표창) ----- ----- ----- --. 1. <u>효행 우수자</u> 2. <u>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이상 노인의 부양자</u> 3. <u>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부양자</u>

제9조(효행 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른 부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효행 장려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해당연도의 추석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추석 전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효행장려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u>제10조</u> · <u>제11조</u> (생략)	<u>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u> 1. <u>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u> 2. <u>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u> 3. <u>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u> ②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u> <u>제11조</u> · <u>제12조</u>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	---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수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시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여수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④ 여수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 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여수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수시 문화의 날 외에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주간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여수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과 국립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6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

관, 단체 및 개인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와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⑬ (생략)	제14조(특별휴가)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⑭ ----- ----- ----- ----- -- <u>성폭력피해자와 「여수시의 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